



## 유학생 입학 시 유의 사항

1.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, 학교 규정 및 입학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
2.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학에 결격 사유가 없을 때, 면접을 거친 후 입학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3. 본교는 학생이 소정의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 SEVIS I-20를 발행합니다.
4. 예치금은 \$2,645.00 (ESL 과정, 편입생은 한 학기 등록금 전액)이며, 입학 비용과 수업료로 사용됩니다.
5. I-20를 발급 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F-1 Visa 신청을 포기할 경우에는 I-20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WBU가 발행한 I-20 원본과 수업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, 입학비용을 제외한 금액(수업료)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6. USCIS로부터 F-1 Visa가 기각 되었을 때에는 기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와 수업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학 비용을 제외한 금액(수업료)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7. F-1 Visa는 학생 상황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다르지만, 그 기간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F-1 Visa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(중간고사 이전일 경우 한 학기 수업료 전액, 이후일 경우 수업료의 반액)가 산정되며, 학생은 F-1 Visa가 나온 것을 통보 받은 날부터 학교에 등교하여야 합니다.
8. F-1 Visa가 발급된 후에 학생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등교를 안 할 경우, 학기 중간 또는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(ESL)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거나, 본 학교를 자퇴할 경우에는 예치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I-20는 terminate 됩니다.
9. E.S.L 과정으로 I-20를 발급 받아 입학(신입)한 경우에는 최소한 한 학기를 수료한 후에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, 본교의 다른 과정(대학, 대학원)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
10. 본교는 I-20를 발행하지만, F-1 Visa 관련 업무(**I-901 포함**)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변호사 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. 체류 신분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.  
**\* SEVIS I-901 Fee는 학교에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**
11. 학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명서 및 기타 서류는 수수료(Fee)를 선불해야 하고,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(전화 신청 불가) 한 후 학교 일정에 의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F-1 Visa 취득 후 발급 가능함.)

본인은 이상의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, 동의 합니다.  
(I understand and agree with the above statement.)

Name (Print) : \_\_\_\_\_

Date (MM/DD/YY) :     /     /200

Signature : \_\_\_\_\_